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4. 26.

종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4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7. 4.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조 병 하

가.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96. 6. 15.)내용을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여 매각기준의 불균형을 일치시켜 재산관리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안 제21조제3항제5호)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함 (안 제22조제6항)
-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를 시 이외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이하로 하여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 (안 제38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96. 6. 1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과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여 일부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임.

○ 안 제21조제3항제5호가 신설되는 것은 지방채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을 매각할 경우,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임.

○ 안 제22조제6항의 개정내용은 '81. 4. 30.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지 25로 적용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

○ 동 개정 원안에는 없는 현행규정인 동 조례제3조(중요재산)에 관한 규정중 '95. 5. 16.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을 5억 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개정조례안 제38조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우리구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 답변요지(조병하 재무과장) : 우리구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기에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 개정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삽입하여도 문제점은 없는지?

○ 답변요지(조병하 재무과장) :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누락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수정 삽입하여도 문제가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7. 4. 26. 김 성 환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현행조례 조문중 개정해야 할 조문내용이 본 개정조례안에 누락되었기,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5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안)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74
----------	-----

제안년월일 : '97. 4. 26.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행조례 조문중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5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5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중요재산) ① 생략</p> <p>1. 1전당 예정가격 3억원이상</p> <p>2. 토지에 있어서는 1전당 5천 제곱미터 이상</p>		<p>제3조(중요재산) ① (현행과 같음)</p> <p>1. -----5억-----</p> <p>2. -----1만 -----</p>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

제출년월일 : 1997. 4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96. 6. 15)내용을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여 매각기준의 불균형을 일치시켜 재산관리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안 제21조3항제5호)
- 나.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함(안 제22조제6항)
- 다.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를 시외지역에서는 400㎡에서 700㎡이하로 하여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안 제38조제1호)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1996.6.15 대통령령제15026호)제26조제1항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첨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규정에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제38조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7조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4.(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② (현행과같음)</p> <p>③ (현행과같음)</p> <p>1.~4.(현행과같음)</p> <p>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22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⑤ (생략)</p> <p>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한다</p> <p>⑦ (생략)</p>	<p>제22조(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⑤ (현행과같음)</p>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한다.</p> <p>⑦ (현행과같음)</p>
<p>제38조(수익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p> <p>영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장, 시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3.(생략)</p>	<p>제38조(수익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p> <p>(현행과같음)</p> <p>1.</p> <p>2.~3.(현행과같음)</p>
<p>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p>